



의안번호	제140호
회의연월일	2022. 11. 21. (제503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제출연월일	2022. 11. 7.

인재정책계장, 교육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변경(안 별표5)
- 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안 별표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협의 완료
- 라. 기 타 : 별첨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비고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7의 비고 중 “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부분을 삭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별
 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총경·경정	경감·경위 (경찰간부 후보생)	경사·경장 ·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 530점 이상	PBT 490점 이상	PBT 470점 이상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IBT 71점 이상	IBT 58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80점 이상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50점 이상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20점 이상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Advanced 690점 이상	Advanced 550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
 한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7] <신설 2020. 10. 27.>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제41조제1항제2호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총경·경정· 경감·경위	경사·경장· 순경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
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 3150 - 2832